

수 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2019. 9. .

제 목: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의 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별첨과 같이 발의합니다.

첨 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끝.

발 의 자: \_\_\_\_\_ 위원 (인) 외 1인  
(발의 찬성자 서명 별첨)

수 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

2019. 9. .

제 목: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의 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별첨과 같이 발의합니다.

첨 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끝.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직인)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연월일: 2019. 9. .

발 의 자: 김기석 위원 외 1명

## 1. 주 문

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특별위원회 위원의 수는 9인 이하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

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3.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19-
----------	-----

제안연월일: 2019. 9. .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특별위원회 위원의 수는 9인 이하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

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3.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 [ 관 련 법 령 ]

## ▣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609호, 2019. 3. 12., 일부개정]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시행 2019. 8. 8.]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244호, 2019. 8. 8., 일부개정]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 및 결산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